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 시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2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8.
3. 회 부 일 : 2025. 12.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소방시설
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이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항제2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 ----- ----- ----- ----- ----- ----- ----- -----.
1. ~ 26. (생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설>	2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소방시설업자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u>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8조, 제39조, 제63조),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해태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3조제1항).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3조제3항)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 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9조제1항),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9조제2항)²⁾.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관계 법령)에 해당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관계 행정기관(소방시설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³⁾)이 고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소방시설업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중대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상황임['22년 644명 → '23년 598명(△46명) → '24년 589명(△9명)]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 하에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 시 영업정지·인허가 취소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던 바⁵⁾,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소방시설공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고⁶⁾

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자료: 관계부처합동,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2면.

5) 관계부처합동,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1면 및 23면.

실제로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⁷⁾, 소방시설 공사 분야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82조제1항제7호⁸⁾), 소방시설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 사례(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사례 1)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소방배관을 정비하던 중, 소방 배관 마감 캡(cap)이 탈거되면서 작업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
- (사례 2) 아파트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제연덕트 설치작업 중 덕트 내 개구부로 떨어져 작업자 1명 사망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

8)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종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의안번호 제147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영업정지(제159조제1항)	(좌동)	영업정지
<u><신 설></u>	<u>등록취소</u> (안 제159조제2항)	등록취소 (의안번호 제14720호 개정안이 입법되어야 요청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동항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2018.8.14., 2018.12.18., 2018.12.31., 2019.4.30.>

1. ~ 6. (생략)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신설하고 있으므로9),

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심사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행정청의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는 소방시설업자의 안전관리 투자와 안전한 공사환경을 유도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반면,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국가 및 지역경제 침체와 건설경기 장기 부진으로 인해 다수의 소방시설업체가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소방산업 전반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경기 회복 이후에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의안번호 제147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생략) <신설>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업계가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소방시설업자 영업정지 등 통계**

(자료: 소방청)

(단위: 건)

연도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2020	418	37	42
2021	399	38	18
2022	463	27	7
2023	294	16	22
2024	238	57	30

[출처 : 2021~2022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2023~2025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